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6. 5.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5월 27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3년 5월 31일

라. 상정일자 : 제175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3년 6월 4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복지국장 김찬재)

가. 제안이유

-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를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제정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 2) 지원대상 사업과 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 지원(안 제3조, 안 제4조)
- 3)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보조(안 제5조)
- 4) 조직의 사무에 관한 지도·감독 등(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영등포구지회가 추진하는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지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지회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 1970. 4. 19에 설립허가를 받은 대한노인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244개 시·군·구 지회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영등포구 지회는 1975. 4. 1 조직되어 경로당 170개소를 중심으로 활동해 오고 있음.

노인회의 주요사업 목적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사회봉사를 통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조직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이 2011. 3. 30 제정·시행되었고 서울시는 2012. 5. 22에 조례가 제정된 바 있음.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노인여가활용 프로그램 지원, 노인자원 봉사단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상담센터 운영 등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제 209 호 |
|----------|---------|

제출연월일 : 2013.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목적 및 시책강구 등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대한노인회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대한노인회 사무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3.4.25~ 5.15) 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대상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의견반영(제7조제3항 신설)
(반영안)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4)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영등포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 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